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입법평가 연구 15-17-①-3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배 건 이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

연구자 : 배건이(부연구위원)
Bae, Gun-Yee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광주광역시는 2013년 07월 01일부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중이고, 동 조례에 따라 2014년 전국 최초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합리적인 사후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 및 편익 예측의 적정성,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인권 · 성 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차원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평가수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음
- 광주광역시 최초로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후 입법평가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점은 분명 함.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집행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례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처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조례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내용 및 결과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광주광역시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한옥지원조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III. 기대 효과

- 광주광역시 개별 조례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조례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제어 : 사후적 입법평가, 조례입법평가, 광주광역시 조례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3, and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conducted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in 2014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Korea.
- In order to rationally conduct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criteria for evaluation, which include the practicability of purposes of legislation, the reasonableness of estimated cost and benefit, whether a master plan and an implementation have been formulated, whether a budget has been compiled and executed, legal consistency, including whether enacted or amended superior statutes are reflected therein, whether any violation or discrimination against human rights or gender equality exist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prepared working-level guidelines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to enhance efficiency in conducting evaluations.
- It is obviously significant tha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conducted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municipal statutes. However, the burden on executive agencies has been increased due to redundant evaluations of government affairs, and no criteria for evaluation befitting to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ordinances have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inadequacy of personnel specializing in legislative evaluation led public officials of the responsible agency to conduct the evaluation as a mere formality, and thu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process and the quality of results of evaluation.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lect municipal ordinances necessary for evaluation, from among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 to experts' advice, then draw a conclusion by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on each municipal ordinance with the guidelines for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furthermore present problems in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pose schemes to improve the ordinance.

II. Major Content

-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major content.

- Details of respective legislative evaluations of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ults thereof.
-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subjected to legislative evaluations are as listed in the following:

Evaluated Municipal Ordinance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Historical Cultur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of Bus Stops for the Mobility-Disadvantaged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Improvement of Convenience in Movements of the Education-Disadvantaged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of Tenant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Building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Ecological Landscap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for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Cultural City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for Women's Safe Living

- Evaluation of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schemes to improve the ordinance.

III. Expected Effects

- It is expected to ensure practical effect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mot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future by conduct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proposing method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presenting problems in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is the basi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posing the direction in supplementing the ordinance.

 Key Words :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방법	14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15
제 1 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현황	15
1. 자치법규 현황	15
2. 자치법규 입안절차 관련 규정	17
3. 자치법규 입안절차	22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26
1. 제정배경	26
2. 주요내용	28
3. 평가현황	39
제 3 장 광주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47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47

제 2 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48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48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51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54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57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59
6.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62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64
8.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65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67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68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71
제 1 절 개별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총평	71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109
참 고 문 헌	113
<참고자료 1>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115
<참고자료 2>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119
<참고자료 3>	
사후 입법평가 작성서식	12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입법평가는 “보다 좋은 입법(Better Regulation)”의 관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론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¹⁾ 현재까지 입법평가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법률의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제·개정되는 입법절차 속에 입법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과 그 평가기준 등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²⁾ 이처럼 법률차원의 입법평가 연구와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논의와 연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13년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약 100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자치입법의 중요수단이기 때문에, 입법평가를 통해 그에 관한 질적 제고와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입법평가 운영과 평가사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개별지역에 관

1)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법령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입법평가를 제도화 한 국가마다 다름

2)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강현철·원소연,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1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9. 10;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한 입법평가연구를 통해, 향후 조례입법평가를 제도화 하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례입법 평가제도는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2장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자치법규 입안절차 속에서 조례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 가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약 10개의 광주광역시 조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조례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효율적 제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 같은 개별평가결과를 토대로 그에 관한 총평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실제 제3장에 서 실시한 개별 조례에 관한 입법평가는 전문가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개별 조례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성 분석방법을 사용 할 것이다. 특히 조례의 체계성 분석시 유사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제 1 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현황

1. 자치법규 현황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치법규는 총 87,163개이며 시·도의 경우 평균 532개 시·군·구에 의하면 평균 346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³⁾ 2015년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 규칙 이하 훈령 예규를 모두 포함하는 자치법규는 총 794개이며, 그 가운데 조례는 505개에 해당한다.⁴⁾

<표1>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현황⁵⁾

법규 유형	개 수
조례	505
규칙	133
훈령	119
예규	37
기타	0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9명과 비례대표의원 2명을 포함해 총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의안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617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가결된

3) 행정자치부 연도별 자치법규 현황정보, [http://www.elis.go.kr/\(2015.08.30 최종확인\)](http://www.elis.go.kr/(2015.08.30 최종확인))

4)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29000&isfez=\(2015. 08. 30 확인\)](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29000&isfez=(2015. 08. 30 확인))

5)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29000&isfez=\(2015. 08. 30 확인\)](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29000&isfez=(2015. 08. 30 확인))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것은 561건에 해당하여 제6대 시의회의 조례안 가결률이 90.92%에 이르고 있다.⁶⁾

<표2> 광주광역시 의안처리 현황

구 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월회	비고 (계류)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합 계	1,049	1,031	867	122	1	4	37 18		
2010	계	130	129	112	16		1 1		
	조 례 안	소 계	57	56	46	9	1 1		
		의 원	13	12	8	4	1		
		시 장	31	31	27	3	1		
		교육감	13	13	11	2			
		예산 · 결산안	13	13	8	5			
		동의 · 승인안	11	11	11				
		건의 · 결의안	17	17	15	2			
		기 타	32	32					
2011	계	265	261	222	38		1 4		
	조 례 안	소 계	148	145	112	32	1 3		
		의 원	62	61	43	17	1 1		
		시 장	79	77	64	13	2		
		교육감	7	7	5	2			
		예산 · 결산안	14	14	8	6			
		동의 · 승인안	21	21	21				
		건의 · 결의안	33	32	32		1		
		기 타	49	49	49				
2012	계	318	315	236	42	1 3	33 3		
	조 례 안	소 계	205	203	131	36	3 33		
		의 원	133	132	77	21	1 33		
		시 장	55	54	39	13	1		
		교육감	17	17	15	2			
		예산 · 결산안	13	13	8	5			
		동의 · 승인안	26	26	26				
		건의 · 결의안	19	19	19				
		기 타	55	54	52	1 1			

6)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57~58면 표

구 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철회	비고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2013	계	254	247	220	24		1	2 7		
	조례안	소 계	148	142	122	17	1	2 6		
	의 원	67	63	50	13			4		
	시 장	70	69	64	4		1	1		
	교육감	11	10	8			2	1		
	예산 · 결산안	14	14	8	6					
	동의 · 승인안	25	25	25						
	건의 · 결의안	29	28	27	1			1		
	기 타	38	38	38						
2014	계	82	79	77	2			3		
	조례안	소 계	59	56	54	2		3		
	의 원	22	19	19				3		
	시 장	33	33	31	2					
	교육감	4	4	4						
	예산 · 결산안									
	동의 · 승인안	6	6	6						
	건의 · 결의안	3	3	3						
	기 타	14	14	14						

*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57~58면 표인용

2. 자치법규 입안절차 관련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입안절차와 관련해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에게 있고,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의결기관으로서 광역시의회와 집행기관인 광역시시장을 두고 있다. 양자의 운영과 구성은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적 특성을 갖는다.⁷⁾

7) 박균성, 행정법론(下), 박영사, 2010, 108면

광주광역시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의결하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법 및 지장재정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와 같은 지방 의회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해당 지역의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는 행정감시권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40조의 1, 제41조 및 제42조). 또한 그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자율권을 갖고 있고(「지방자치법」 제43조, 47조, 제55조 등), 또한 의회내부 구성원에 관한 선거권과 지역주민의 청원에 관한 심사·처리권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73조 및 76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서류제출 및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0조의 1) 그리고 각종 심의를 위한 질의절차를 위해 지방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권 및 질의권이 주어져 있다.⁸⁾

광주광역시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하고, 광주광역시의 사무를 통할하고 관리 및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시장과 같은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 자치법규와 관련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23조).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먼저 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기본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규정이 자치법규 입안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 등에서 전문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산하에 법률 사

8)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35-36면

안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마련해 두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 2 조(직무) ① 입법 ·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 · 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 · 법률에 관한 사항
- ② 입법 ·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입법 ·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회의 운영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연한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이며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는 15일 이내여야 한다(「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12조). 의회의 회의시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 중지 ·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17조), 의안(조례안) 및 청원심사안의 제출된 경우 의회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따라 심의해야만 한다(「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27조 제1항). 만일 자치법규 의결과 관련해 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집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27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대변인, 감사관,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정책실, 자치행정국, 체육지원국, 소방안전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광주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건설위원회

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일자리투자정책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청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한다.

제48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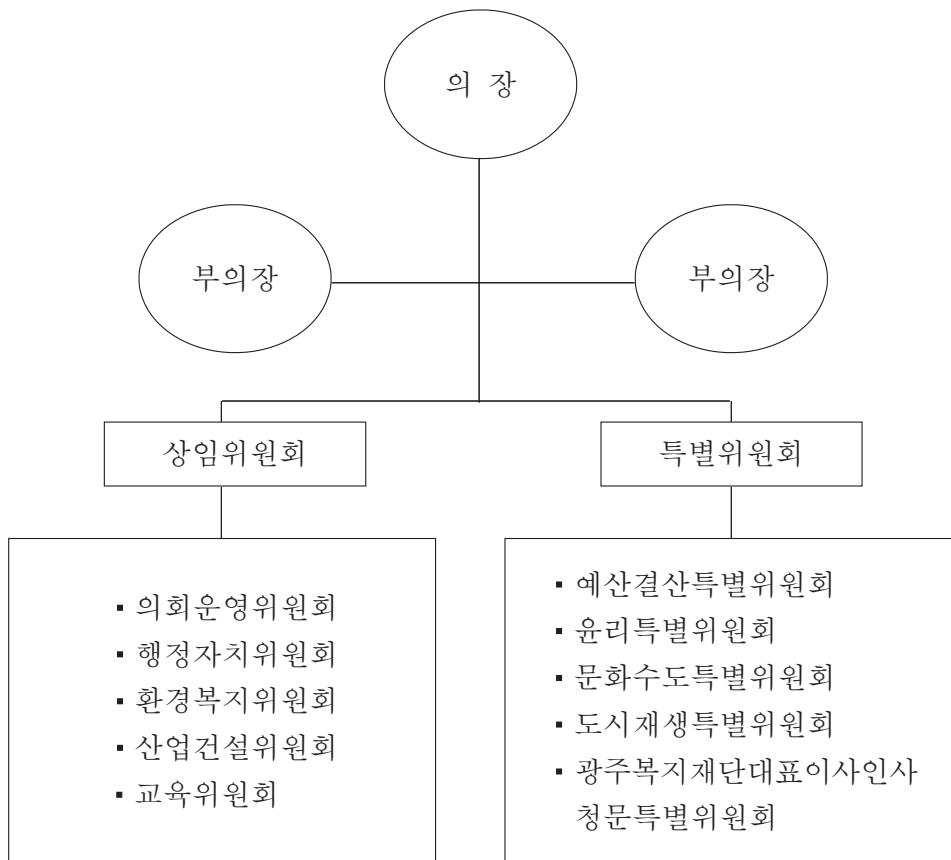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담당관, 실·과장급. 다만, 위원회에서 대변인, 감사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권담당관이 부재로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사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기관장
 5.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자치법규 입안절차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이하 의원들로 구성되며, <그림1>에서처럼 총 5의 상임위원회와 5의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⁹⁾

9) 광주광역시의회; <http://council.gwangju.kr/menu.es?mid=a10103020000>(2015.08.30 확인)

<그림1> 광주광역시의회 구성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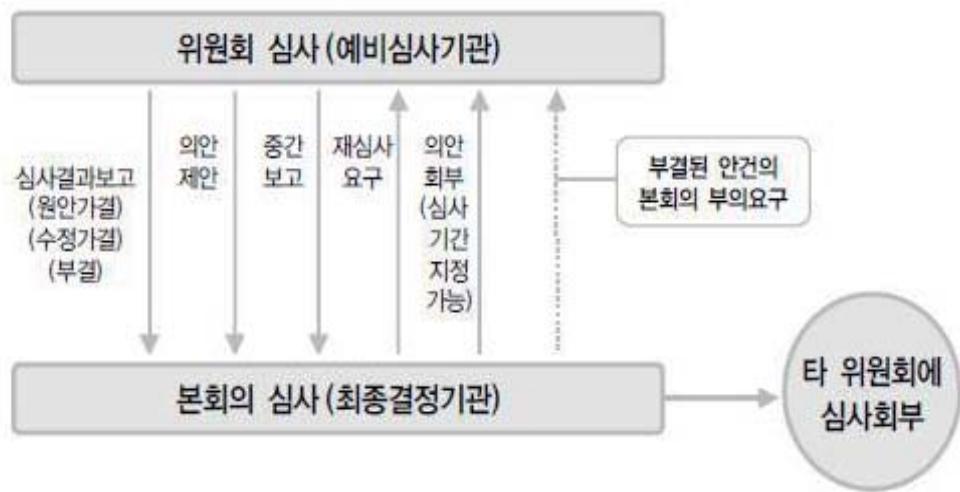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와 그와 관련해 안건에 관한 전문적 · 사전적인 심사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발언자유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원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의회에 적용되는 원칙과 동일하다.¹¹⁾

10) 광주광역시의회; <http://council.gwangju.kr/menu.es?mid=a10103020000>(2015.08.30 확인)

11)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39~44면

<그림2> 광주광역시 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의 심사



*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38면 위원회와 본회 관계 그림 재인용

자치법규 가운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의회의 중요 의결대상이 된다.¹²⁾ 광주광역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의안 제출시 “제안이유”를 분명히 하고 발의자 및 찬성자의 서명, 그리고 조문대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의 형식으로 제출해야만 한다.¹³⁾ 조례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안자의 취지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관한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치거나 축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¹⁴⁾ 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끝나면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¹⁵⁾ 「지방자치법」 제

12)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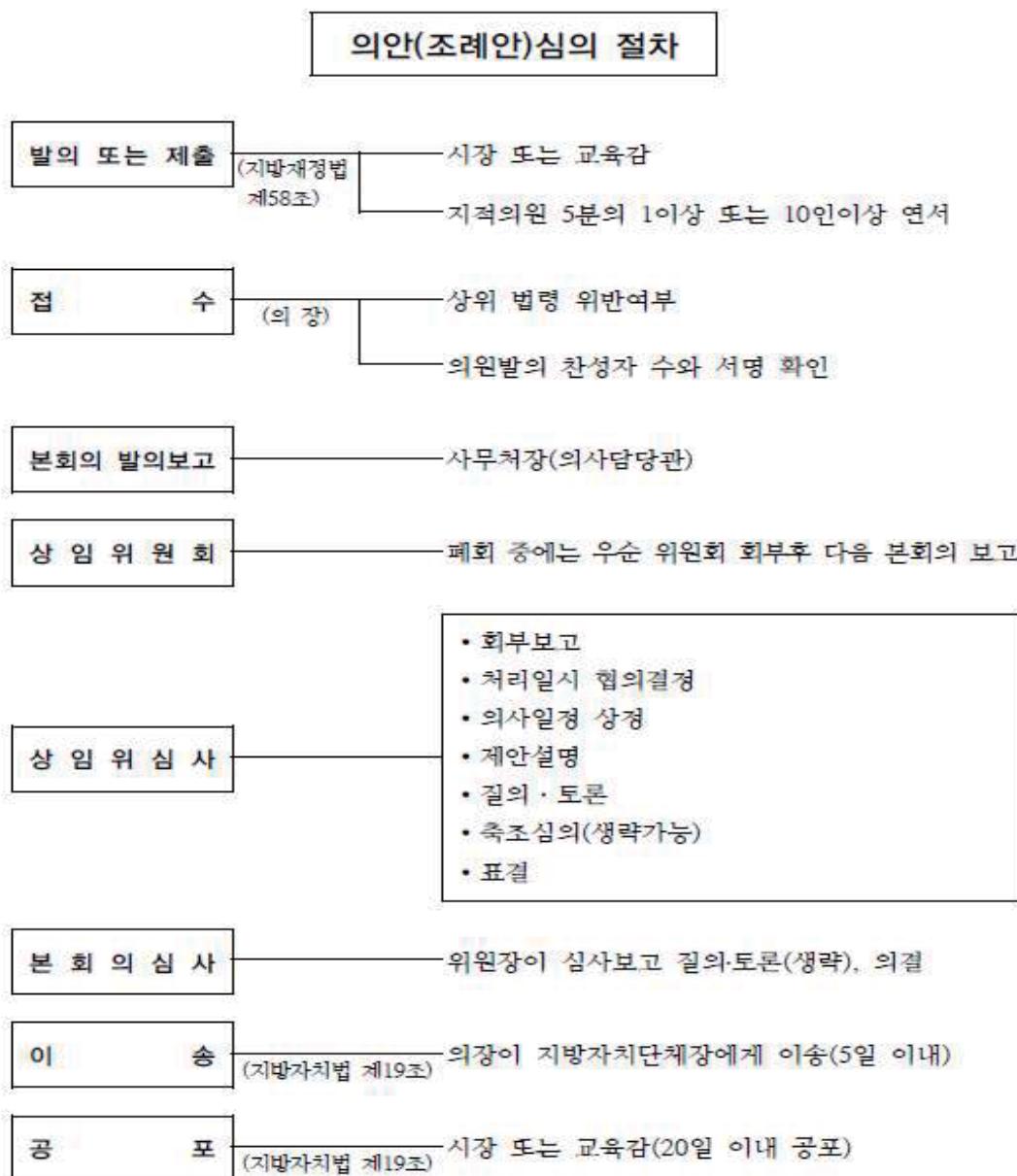
13)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46면, 그림

14)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46면, 그림

15) 광주광역시의회, 앞의 글, 46면, 그림

1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림3>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절차



*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46면 그림 제인용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1. 제정 배경

광주광역시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표2> 광주광역시 의안처리현황에서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발의된 조례안은 총 617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65건에 해당하여 전체 조례안 가운데 75.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나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가 직접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조례의 제·개정이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처럼 인용되면서 불필요하고 경쟁적인 조례입안경쟁이 이뤄지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수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었다.¹⁷⁾ 또한 자치법규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조례의 발효 이후 집행효과 또는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의회 서정성 의원에 의해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동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에 의하면, 정책수립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그 발효 이후 집행기관에서 의도한 목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를 통해 보다 낳은

16)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57~58면 표

17) 제6대 광역시의회에 관한 참여자치21의 분석에 의하면, 가결된 조례안 252건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변경이 59건(68.3%)이고,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30건(33.7%)으로 조사됨. 특히 조례제정안은 147건이나 되었는데,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행정 변화와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고 분석하였음; 채정희, 광주드림일보, 2014. 09. 03, “6대 광주시의회 조례 252건, 5대의 두 배 넘어”,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8995(최종 확인2015.08.30)

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 하고자 하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¹⁸⁾

이에 대해 집행기관인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조례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와 유사한 제도로서 그에 관한 실행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중첩될 수 있다는 점, 조례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정부업무평가가 다를 경우 두 평가 영역이 명확하게 법령상 체계가 정립된 이후에 조례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⁹⁾

그러나 의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자치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에 관한 평가인 반면²⁰⁾, 당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따른 평가는 조례에 관한 평가로서 그 대상과 영역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선고2006추45 판결」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²¹⁾

18) 광주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13. 06. 10, 53면

19) 광주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13. 06. 10, 54면

20)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1) 대법원 선고2006추45 판결(<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294>)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4조에서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의 단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지 않은 조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²²⁾ 그 결과 201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1) 평가 개념 및 대상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 「사후평가조례」)」 제2조에서는 “사후 입법평가”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정의조항을 둔 것은 법규의 불명확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후 평가조례」 제2조에서는 사후 입법평가가 입법의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유사성을 갖는 추상적 용어를 동시에 규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양자가 동일한 개념이라면 어느 한 개념으로 통일하면 되겠지만, 양자가 다른 개념이라면 그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실

&q=2006%EC%B6%9445&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a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bstract, 대법원판례정보 사이트, 최종확인 10.30)

22) 광주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13. 06. 10, 58면

현성”은 일반적 의미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뜻하는데, 조례의 “실현가능성”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미 시행된 지 2년이 된 조례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에서 사전예측적 성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실효성”은 실질적 효과를 갖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므로²³⁾,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가 조례가 의도한 목표대로 효과를 발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면 실현성보다는 실효성이라는 개념이 평가의 목적으로 더 타당하다 판단된다.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을 광주광역시 조례 한정하고, 그 가운데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사후평가조례」 제4조). 동 규정에 따를 경우 사후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실제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연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조례로서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위임조례(조직 및 직제, 기관설치 및 업무분장 그리고 단순기술 내용 담은 조례 제외)를 제외한 모든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먼저 사후 조례평가의 대상에서 위임조례를 제외한 것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조례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 할지라도, 위임사무 관련된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임조례라 할지라도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례 안에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

23) 실효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법규범 가운데 행정권의 내부적인 조직, 행정의 내부적인 운영 등을 정하는 것 외에 일반국민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의 관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법의 내용이 현실의 규범력을 발휘하고 실현되는가의 여부는 사람들이 그 의사에 따라서 법규범을 준수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법규범의 실효성의 문제이며, 입법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의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① 법령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결과 그것이 사회일반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검토를 하지 않으면 한된다. ..(중략)...② 법령정보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다...(생략)”; 박영도, 입법학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12, 145-146면

한 사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의 선정을 비롯해 실제 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주관부서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²⁴⁾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을 2년이 지난 조례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2년이라는 기간이 조례가 시행된 후 그것이 실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기간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 법률에 관한 입법평가의 경우 시행된 지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 입법효과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평가한다. 만일 평가과정에서 조례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적어도 시행한지 2년이 조금 넘을 때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된다. 전체 조례평가 결과와 연계된다면 결국 조례개정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례개정안에 관한 사전적 심의와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 평가전문가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마다 평가가 실행된다면 결국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례 입법평가가 집행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는 입법평가에 관한 실효성 문제를 불러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을 2년이 지난 조례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기간적인 타당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4) 차현숙 외 1인,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5-37면

조례입법평가에서 평가대상의 확정은 평가시행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는 갖는다.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조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례집행기관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책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통제도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입법평가시 해당 주관부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운영현황에 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평가위원회는 해당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설명 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감시 및 통제자이다.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최종적인 통제 역시 의회의 역할인 것이다. 이런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관련해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조례가 아닐지라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감시 및 감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평가 주체

광주광역시장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진다(「사후평가조례」 제3조). 사후평가조례 및 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주체로서 산하에 평가수행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장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조례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관한 인사권을 갖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조례의 사후평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주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시장이 직접적인 평가주체라고 언급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

이어서 「사후평가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입법평가서의 작성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인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광역시장은 조례에 관한 사후 입법평가를 총괄하는 평가주체이고, 그에 소속되어 있는 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실제 개별 조례에 관한 평가를 실행하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입법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 실무그룹이라 하겠다.

평가주체와 동 조례상에는 평가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의무는 시장에게 주고, 실질적인 수행에 관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와 주관부서, 총괄부서로 기능적으로 나눠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와 관련해 3개의 수행주체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총괄부서의 장의 경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후 입법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여부에 관한 평가의뢰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평가수행과 관련해 총괄부서의 장이 갖는 권한과 역할이 입법평가에 관한 의회의 감독권 및 통제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먼저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의해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사후평가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입법평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된다(「사후평가조례」 제7조). 「사후평가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12조에 의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임기시작이 불명확하고 활동기간이 유동적으로 단축되어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활동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5인 이내의 위원일 경우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받고, 법률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하며 거기서 성별 비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어서 조례와 관련해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 같은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평가대상 조례선정 작업은 먼저 해당 조례의 집행실무를 맡고 있는 소관부처의 장, 즉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이하 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동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동 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춰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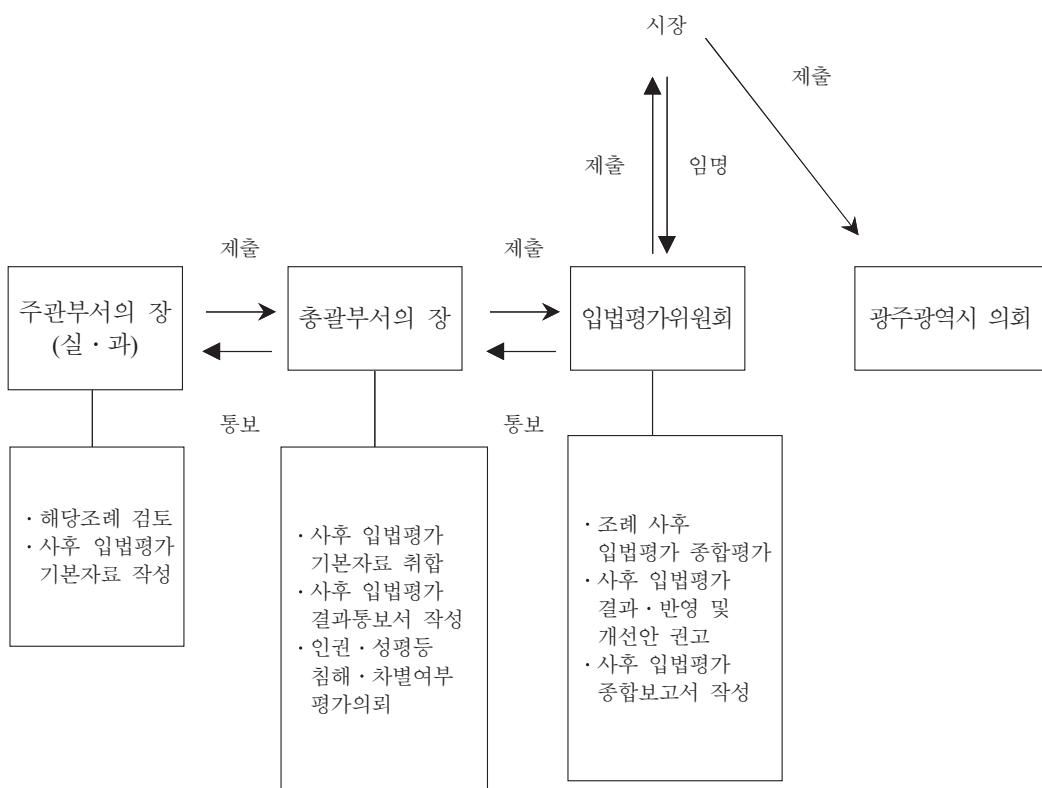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후평가조례」 제6조).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에는 조례 및 관례법령이 기재되어야만 하며,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세부 항목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의 목표달성을 부수효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해야만 하고,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제시되어야만 한다(「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총괄부서의 장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해당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조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취합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사후평가조례」 제9조, 「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마지막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당 조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총괄부서를 통해 주관부서에게 통보한다(「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제8조). 이 때 입법평가 위원회는 입법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사후평가조례」 제9조).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사후평가조례」 제10조).

이상의 과정을 거쳐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입법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제출해야만 한다(「사후평가조례」 제12조)

<그림4>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절차



(4) 평가기준

「사후평가조례」 제5조에 의하면 사후 입법평가는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 ②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⑥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까지 총 7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실제 조례에 관한 사후평가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사후평가조례 제5조에 따라 만들어진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사후평가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세부항목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사후평가조례」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 효과의 분석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준 및 요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준을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실무 주관부서가 작성하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는 관련 세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영향에 관한 평가항목을 넣었다는 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다만 실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주관부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서는 인권영향과 관련된 세부 항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그와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표3>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구 분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입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 · 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계획수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 비용에 따른 편의 발생은 적절한가?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법적 정합성	·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구 분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위원회구성	·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 위원회의 성비는 적정한가		

* 광주광역시 사후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용

<표4>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 1 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제 2 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입법평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임
제 3 조(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 4 조(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조례 ○ 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 5 조(평가 기준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마다 실시
제 6 조(입법평가서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검토 및 기본자료 작성해서 입법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 7 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1인, 부위원장 각 1명, 총 15명) ○ 입법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 - 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됨
제 8 조(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 9 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제10조(평가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응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 반영여부 협의 결정
제11조(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
제13조(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평가현황

2013년 제정된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총 100개의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의 기술적 조례 및 위임조례 제외)를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²⁵⁾ 2014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총 100개 조례 가운데 “현행유지”로 평가된 조례가 51개, 개선권고가 제시된 조례가 49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⁶⁾ 개선권고가 제시된 조례 41개의 조례의 경우 폐지

25)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2014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1-5면 표

26)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2014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1-5면 표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권고가 7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비를 맞추어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5개였으며, 그 외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정의견으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²⁷⁾

광주광역시 최초로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후 입법평가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집행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례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처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5> 2014년도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결과

관리 번호	조례 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1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개선권고(개정)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현행유지
3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현행유지
4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개선권고(개정)
5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개선권고(개정)
6	광주광역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개선권고(폐지)

27)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2014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1-5면 표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관리 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7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개선권고(성비)
8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현행유지
9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현행유지
10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개선권고(폐지)
11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	현행유지
12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13	광주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14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예산담당관	개선권고(개정)
15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16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예산담당관	개선권고(개정)
17	광주광역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18	광주광역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수도정책관	개선권고(개정)
19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조례	문화수도정책관	개선권고(폐지)
20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문화예술진흥과	개선권고(폐지)
21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문화산업과	개선권고(시행)
22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문화산업과	현행유지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관리 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23	광주광역시 관광산업활성화 조례	관광진흥과	개선권고(성비)
24	광주광역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관광진흥과	현행유지
25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현행유지
26	광주광역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현행유지
27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개선권고(개정)
28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사회복지과	개선권고(개정)
29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현행유지
30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현행유지
31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32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3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34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개선권고(폐지)
35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36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관리 번호	조례 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37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38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개선권고(시행)
39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40	광주광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개선권고(개정)
41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개선권고(개정)
42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4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44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행유지
45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건강정책과	개선권고(성비)
46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정책과	현행유지
47	광주광역시 현혈 및 장기기증 등록권장에 관한 조례	건강정책과	현행유지
48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환경정책과	개선권고(성비)
49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기후변화대응과	개선권고(시행)
50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도시디자인과	개선권고(성비)
51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도시디자인과	개선권고(성비)
52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재생과	현행유지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관리 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53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도시재생과	현행유지
54	광주광역시 우수시공아파트 포상조례	건축주택과	현행유지
55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대중교통과	개선권고(개정)
56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중교통과	개선권고(개정)
57	광주광역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민협력관	현행유지
58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조례	시민협력관	현행유지
5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민협력관	현행유지
60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민협력관	현행유지
61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민협력관	개선권고(개정)
62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시민협력관	개선권고(개정)
6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신고 포상금조례	회계과	현행유지
64	광주광역시 물품관리조례	회계과	현행유지
65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회계과	현행유지
66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조례	회계과	현행유지
67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회계과	현행유지
68	광주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현행유지
69	광주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체육진흥과	개선권고(개정)
70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체육진흥과	현행유지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관리 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71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구조구급과	현행유지
72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방호예방과	현행유지
73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조례	방호예방과	개선권고(개정)
74	광주광역시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정책관	개선권고(시행)
75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제산업정책관	현행유지
76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정책관	현행유지
77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경제산업정책관	현행유지
78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조례	전략산업과	개선권고(개정)
79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 부품산업 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략산업과	현행유지
80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략산업과	현행유지
81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 지원조례	전략산업과	개선권고(개정)
82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조례	기업지원과	현행유지
83	광주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지원과	개선권고(시행)
84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기업지원과	개선권고(성비)
85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지원과	개선권고(개정)
86	광주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	기업지원과	개선권고(시행)

제 2 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관리 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87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생명농업과	개선권고(개정)
88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 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	생명농업과	개선권고(개정)
89	광주광역시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생명농업과	개선권고(개정)
9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조례	투자유치지원관	개선권고(개정)
91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투자유치지원관	개선권고(개정)
92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사업지방채 발행조례	투자유치지원관	개선권고(개정)
93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자리창출과	현행유지
94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자리창출과	개선권고(개정)
95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국제협력과	개선권고(시행)
96	광주광역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협력과	개선권고(개정)
97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공무원교육원	개선권고(폐지)
9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공무원교육원	개선권고(개정)
100	광주광역시 간이상수도 ·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조례	상수도사업본부	개선권고(개정)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도시철도 건설본부	현행유지

*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2014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1-5면 표 인용

제 3 장 광주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 조례 입법평가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서 광주광역시의 10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사후평가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조례로서,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가운데 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사후평가조례」 제4조).

이차적으로는 평가대상의 선정과 관련해 2014년 광주광역시청이 실시했던 조례 사후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례 가운데 광주광역시 조례 입법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를 추천받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때문에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의 경우 사후적 입법평가의 시범적 실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조례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사후평가조례 제5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정립된 <표3> 사후 평가기준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다만 조례 사후입법평가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실증 분석자료를 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바, 조례의 체계성 분석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례에 관한 체계성 위주의 사후평가결과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평가서식을 이용해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표6>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3	광주광역시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6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8	광주광역시 한옥지원조례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제 2 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 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문화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5 호에 따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동 조례는 광주광역시 의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광주광역시를 아시아의 문화도시로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를 둔 조례로서 입법적 목표와 가치는 충분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역사문화 자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개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 3 조(기본 목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목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역사문화 자원의 고유가치 재창출
2. 역사문화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물적 기반시설 구축
3. 역사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 증진
4. 역사문화교육으로 시민을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 양성

제 4 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역사문화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4. 시민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
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6. 역사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7.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이 때 광주광역시장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역사

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 제2항). 이상을 놓고 볼 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걸 맞는 역사문화교육의 증진과 관련 인력의 양성이 동 조례의 주요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치사무에 관한 시행과 관련해 집행기관의 관련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제고”의 경우 집행기관의 관련 사업과의 조정이 예상되는 항목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 “역사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역시 그에 관한 절차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할 사항이다. 그러나 동 조례는 2012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입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개별 항목에 관한 체계성 분석에 따르면, 제8조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적 미비사항이 발견되었다.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제 8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국장은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역사 문화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동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데, 그에 관해 시의회 추천 또는 관련 전문가 그리고 해당 집행기관 담당자 등이 선정대상이다. 그런데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역사문화교육위원회는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행기관의 정책결정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시의회 추천받은 의원 및 이하 항목별 위원의 임명 숫자를 조례에 명시하여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시 성비를 고려하여 동 조례에서는 인권 및 성별영향에 침해 또는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이하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되었다(「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제1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자치조례에 해당한다.²⁸⁾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28)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 조례 제5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내용과 표제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거가 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례 제5조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표제를 변경하는 것이 그 내용상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의 규정 사항이 이 법에 근거한 사항을 포함(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버스정류소에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조례와 같이 그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제 2 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p>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노선에 한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의 기본방향 2.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4. 버스 운송사업자, 버스운전자, 버스 이용자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례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수립될 수 있는 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다.²⁹⁾ 광주광역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

29) “2014년 1월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김영남 광주시의원 발의)’에 따라 지난해 말 서구 화정동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사거리에 ‘교통약자 전용 시범정류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 정류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이 멀리 떨어져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가지 않아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와 정류소 사이에 설치하는 ‘버스 승하차 장소’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시범 정류소는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략) ...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는 모습은 일반 버스정류장과 다를 바가 없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려면 ‘교통약자 전용 시내버스 정류소’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운영 시스템도 이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데, 현실은 달랑 정류소만 설치돼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교통약자 전용’이란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류소를 살펴보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점자 안내나 음성 안내도 없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따로 보도 턱을 낮추거나 넓은 공

의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미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 조례를 통합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조). 동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에 해당한다. 동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위임근거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통칭하고 있으나, 위임조례 특성상 위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워센터의 설립·운영과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이과 청각장애이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해당 위임사무의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조례입안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어서 동 조례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편의 증진사업 및 이동지원센터 등에 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는 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평가수행에 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체계성 분석결과 동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인적 구성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둘째, 동 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그 대상은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운데 선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는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자의 자격미달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위원의 공개모집 방식은 조례의 집행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실

제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일 것이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8조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제 8 조(위원회의 구성)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사회복지·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3.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p>제 2 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이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 제1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이라는 차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시대의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체계성을 띠고 있는 조례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동 조례 제2조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에서는 2015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6일자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법」 제60조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 제2조 제1호는 아직 위와 같은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택법』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60조 삭제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 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p> <p>(생략)</p>

이어서 동 조례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해제”라는 법률용어의 명확한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³¹⁾”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한 모든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19조 제1호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위촉의 해제” 부분을 “위원의 해촉”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p>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1946300>(2015.08.30.확인)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³²⁾ 그러나 그에 관한 지원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장의 권한 및 조례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자살예방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자살예방조례」 제1조).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점으로 언급할 만한 조항은 없어 보인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동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은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지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³³⁾ 또

32)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 9 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 ·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2. 공동사용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공공하수도사용료 · 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3)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 3 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

한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³⁴⁾ 통상적으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무만 정한 채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조례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동 조례의 경우 시 직영체계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수립하여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살예방조례」제14조). 동 조례를 통한 자살예방 인프라 형성은 실제 광주광역시 자살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⁵⁾ 이상을

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및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시책

34)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5) 광주광역시청 시정소식, 2014. 09. 15 참조

놓고 볼 때 자살예방조례는 체계성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된다.

<표7>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정책 관련 통계 및 현황

통계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살률(인구10만명 당 자살 사망자수)광주지역은 22.6명으로 전년 25.4명보다 11% 감소하여 16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도별</th><th colspan="2">2011</th><th colspan="2">2012</th><th colspan="2">2013</th><th rowspan="2"></th></tr> <tr> <th>사망자수</th><th>자살률</th><th>사망자수</th><th>자살률</th><th>사망자수</th><th>자살률</th></tr> </thead> <tbody> <tr> <td>전국</td><td>15,906</td><td>31.7</td><td>14,160</td><td>28.1</td><td>14,427</td><td>28.5</td><td></td></tr> <tr> <td>광주 광역시</td><td>384</td><td>26.5(6)</td><td>370</td><td>25.4(4)</td><td>331</td><td>22.6(16)</td><td></td></tr> </tbody> </table>							시도별	2011		2012		2013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전국	15,906	31.7	14,160	28.1	14,427	28.5		광주 광역시	384	26.5(6)	370	25.4(4)	331	22.6(16)	
시도별	2011		2012		2013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전국	15,906	31.7	14,160	28.1	14,427	28.5																																
광주 광역시	384	26.5(6)	370	25.4(4)	331	22.6(16)																																
<p>**통계청(2014), 사망원인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률 감소원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자살률 감소원인은 정신보건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하여 상호연계해 운영한 결과임 - 특히 시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자살위기 상담과 현장출동을 위해 야간 전단요원을 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소방경찰 등 3차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동시출동·개입 등 현당 대응능력을 강화한 결과임 * 13년 위기상담전화 4,571건/현장출동132건/연계74건 - 2013년 위기상담전화 총 상담건수 4541건 중 자살상담이 2599건이며, 그 중 상담을 받고 현장출동해 응급관리한 것은 총132건에 해당함 * 1일 야간상담건수: 2012년 자살예방센터선립 전 0.3건→ 2013년 6건(20배 증가) - 2013년 자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살위기자를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생명사랑지킴이’ 3447명과 자살위기상황 응급개입이 가능한 자살예방전문가 150명을 양성하여 인프라를 형성하였음 																																						
<p>* 광주광역시청 시정소식(2014. 09. 15) 참조 및 정리 <a)<="" a="" href="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160301000000&b_code=00000000027&act=view&list_no=286544, 2015.09.06 확인"></p>																																						
<hr/> <p><a)<="" a="" href="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160301000000&b_code=00000000027&act=view&list_no=286544, 2015.09.06 확인"></p>																																						

* 광주광역시청 시정소식(2014. 09. 15) 참조 및 정리

(

(

6.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이하 외국인지원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외국인 지원조례」 제1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지원을 통해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례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동 조례는 최근 2015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그 이전 문제시 되었던 규정들을 일괄 개정하여 체계성을 보완하여 크게 문제점으로 언급할 만한 조항은 없어 보인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와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동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수립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단순히 정책적 자문기구의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갖는 바, 분야별로 해당 인원을 명확히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해제”라는 법률용어의 명확한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

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한 모든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촉해제라는 표현은 제1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다. 따라서 “위촉의 해제” 부분을 “위촉의 해촉”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 9 조 (기능)	<p>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 교육청 · 경찰서 · 고용안정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담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5조 (위원의 위촉해제)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이하 「생태경관 조성 조례」)」는 지역의 일정한 공간단위에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이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로 생태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생태경관 조성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생태경관 조성 조례에 관한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시 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생태경관”이라는 용어가 “자연경관”이라는 용어와의 개념상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농촌의 경환경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광

주광역시청 내 관련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조례제정과정을 감안하였을 때, 도시 전체의 통일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역별로 차별성 있게 생태경관이 조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생태경관도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식물”이란 풍토성, 경제성, 미감을 지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해바라기, 유채, 도라지, 청풍보라, 자운영 등 초화를 말한다.
2. “생태경관”이란 광주천변, 영산강변, 빛고을산들길 · 문화재 · 사적지 주변 등 일정한 공간단위에 식재된 경관식물로 주변과 식별되는 경치를 말한다.

8.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한옥 지원조례」)」는 건축미를 지닌 한옥을 살기 위한 생활공간과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취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한옥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한옥 지원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및 제5호에 따라 지역의 한옥생활공간의 활용을 통해 관련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한옥 지원 조례의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점을 갖는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동 조례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한옥위원회와 관련해 몇 가지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한옥지원정책을 위해 설립되는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개별 분야별 위원의 구성수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면 동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한옥위원회는 한옥마을 지정, 한옥건축 관련 지원액의 결정, 그리고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옥과 관련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개별 분야별로 인적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배정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협의를 보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완한다면 입법적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
2. 한옥 건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의 결정
3.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의 결정
4. 제26조에 따른 한옥의 매수
5.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6. 그 밖에 한옥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옥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 또는 역사 등에 관한 의견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이하 「문화도시 조성조례」)」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문화도시 조성조례」 제1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문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시 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동 조례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결과 제10조에서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 제2조에서 용어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10조(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① 시장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현황과 활동 사항 등을 분석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문화동아리를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동아리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조례」 제15조의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 조례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다른 조례의 위원회 구성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시장이 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에 시장의 임명권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15조(위원회 설치) 시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 제안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이하 「여성안전생활지원조례」)」는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여성안전생활지원조례」제1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역여성의 안전생활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치조례에 해당한다.

동 조례에서는 체계성 분석결과 입법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의 생활보호와 그와 관련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다(「여성안전생활지원조례」제1조). 그러나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이 생활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 제15조(생활안전협동조합 등 육성)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이 생활 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여성 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배관·전기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생활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활안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생활안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에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품판매, 택배업체 등과 같은 여성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고 직원관리가 잘 되는 기업에게는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제로는 “여성안전기업의 육성”이라는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안전”이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여성안전생활조례를 통해 여성의 물리적 폭력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면 동 조례에서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가능한 기업체는 제16조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안전생활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 밝힌 바처럼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면 동 조례 제16조에서 언급한 기업체가 인증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범죄나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여성이 갖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구분되지 않은 채 목적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성의 생활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차적

으로 범죄 및 폭력과 같은 물리적 위협요인으로부터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 및 지원책에 대한 효과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조례 가운데 성폭력 관련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과 개별 규정들이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전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동 조례에서는 특별히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 제16조(여성안전기업 육성) ① 시장은 가정방문을 통한 상품의 설치, 수리, 점검 따위를 수반하는 가전제품 또는 보일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택배업체 및 시내버스·택시 운송사업체 등 여성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체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들이 교육을 잘 이수하고, 여성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직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을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원 교육 및 기업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제 1 절 개별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총평

개별 조례 입법평가는 체계성 분석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성이 결여되거나 전부개정을 요하는 조례는 없었다.

다만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처럼 입법목적 자체가 개념적으로 불명확성을 띠어 관련 규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지 못한 채 제정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제안자의 입법취지 및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명료한 목적을 통해 집행기관이 조례집행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운영을 위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어서 각종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해 집행기관의 시행규칙 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2건이나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시장의 임명을 통해 해당 정책과 관련 사항을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의결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 총원 및 위원의 자격만을 명시할 뿐, 그에 관한 정확한 인적 구성수와 관련 자격제한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이 주민의 지원 또는 지원액의 결정 및 사업시행의 평가 등과 관련되는 경우 심의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위원회 소속위원의 이해관계와 연관성을 갖기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해당 분야별 위원의 구성숫자를 사전에 명시하여 민주적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전체 10개의 조례에서 인권 및 성평등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평가조례	문제점	개선방향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	- 위원회 구성규정 - 시행규칙 미비	- 위원회 분야별 인적구 성수자 명시 - 시행규칙 제정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 제5조의 조례내용과 표제의 불일치 - 조례의 일부내용이 교 통약자이동편의증진 에 관한 조례와 중 첩됨	- 제5조 조례내용과 표 제 일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의 통합
3	광주광역시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상위법상 위임근거 불 명확 - 위원회 구성규정 - 시행규칙상 위원회 위 원 자격제한규정은 상 위의 조례에 두는 것 이 타당함	- 상위법상 위임근거 명시 - 위원회 분야별 인적구 성수자 명시 - 시행규칙상 위원회 위 원 자격제한규정은 상 위의 조례에 규정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미 반영 - 법률용어상 “위촉위 원의 위촉해제”라는 표현의 부적합성” - 시행규칙 미비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해제(해지)”로 용어수정 - 시행규칙 제정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없음	- 없음

제 1 절 개별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총평

	평가조례	문제점	개선방향
6	광주광역시 외국민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규정 - 위원회 분야별 인적 구성숫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분야별 인적구 성숫자 명시 - “해제(해지)”로 용어수정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8	광주광역시 한옥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분야별 인적구 성숫자 명시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동아리 개념 정의 필요 - 위원회 구성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동아리 개념정 의 규정 삽입 - 시장의 위원회 임명권 명시 필요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목적의 불명확성 으로 인해 개별규정 간 유기성 및 통일 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목적조항 수정 - 동 조례 가운데 성폭력 관련 규정은 삭제

[입법평가사례표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1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2012.1.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5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문화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는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역사문화 자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개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광주광역시장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특히 이와 같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그리고 이하 개별 사업(제4조 1항 제3호) 및 관련 정책에 관한 분석 및 평가(제4조 제1항 제6호) 역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절차규정이 필요함.
- 그러나 동 조례는 2012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입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위원회 구성

- 동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역사문화교육위원회는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시의회 추천받은 의원 및 이하 항목별 위원의 임명 숫자를 조례에 명시하여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법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시의회 추천받은 의원 및 이하 항목별 위원의 임명 숫자를 조례에 명시하여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는 방안의 개정안 도출이 필요함
- 조례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2012.11.0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는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 동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의 규정 사항이 이 법에 근거한 사항을 포함(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적용대상을 버스정류소에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조례와 같이 그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규정이라 판단됨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 입법 목적의 실현성</td> </tr> </tabl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 | |
|--------------------------------|
| 2. 비용과 편의 예측 등의 적정성 |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
|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서구 화정동에 교통약자 전용 시범정류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했으나, 그 이후 활성화 및 보완조치에 관한 정책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법적 정합성

- 동 조례 제5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내용과 표제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수립될 수 있는 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임
- 광주광역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미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 조례를 통합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법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체육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 제5조의 표제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용과 표제가 일치하도록 해야 함
-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라 수립될 수 있는 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효과적인 조례집행과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동 조례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는 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입법평가사례표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1.11.01	2012.11.01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위임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에 해당하므로 동 법률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해당 위임사무의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조례입안방식이라 할 수 있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 및 제7조의 2, 제13조 등)에 따라 정한 조례로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위임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1. 입법 목적의 실현성</td></tr> <tr> <td style="padding: 5px;">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td></tr> <tr> <td style="padding: 5px;">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td></tr> </tabl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 |
|--------------------------------|
|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
|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 입법목적의 실현성

- 동 조례는 위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됨

○ 법적 정합성

- 동 조례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편의 증진사업 및 이동지원센터 등에 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는 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평가수행에 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동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경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인적 구성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판단됨
- 동 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그 대상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운데 선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는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자의 자격미달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위원의 공개모집 방식은 조례의 집행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

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시행규칙 보다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일 것임

○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7 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위임근거를 갖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조례 제7조 제4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원회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는 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평가수행에 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의 체계성 강화를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있는 위원의 자격미달사유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조항에 포함하여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4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2012.01.01	2014.09.01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로서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음 -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1월 6일자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법 제60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함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 입법 목적의 실현성</td></tr> <tr> <td>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td></tr> </tabl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 | |
|--------------------------------|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
|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지방자치시대의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거지원책을 언급함으로서 전반적으로 법령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구체화 한 조례가 판단됨
-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입법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법적 정합성

- 동 조례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해제”라는 법률용어의 명확한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한 모든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이므로 동 조례 제19조 제1호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지방자치법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생략)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경우 관련 법률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서둘러야만 함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 동 조례 제9조와 관련해 조례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행에 대해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
- 동 조례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라는 표현을 “위원의 해촉”이라고 표하는 것이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입법평가사례표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011.05.13	2015.07.23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며, 동 조례는 위이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 입법 목적의 실현성</td></tr> <tr> <td>2. 비용과 편의 예측 등의 적정성</td></tr> <tr> <td>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td></tr> <tr> <td>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td></tr> <tr> <td>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td></tr> <tr> <td>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td></tr> <tr> <td>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td></tr> </tabl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의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의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을 띠고 있음
- 동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은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지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광주광역시 자살예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무만 정한 채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조례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동 조례의 경우 시장의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직영체계로 운영하는 자살예상센터를 수립하여 24시간 상담을 통해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가 의도한 목표를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됨

○ 법적 정합성

- 동 조례의 법령체계상 개별규정간의 모순 또는 관련 조례와의 충돌이 보이지 않는바 체계성을 띠고 있음

○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조례 개선방향	
- 없음	

[입법평가사례표 6]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6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12.10.02	2015.07.01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생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및 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 법적 정합성

- 최근 2015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그 이전 문제시 되었던 규정들을 일괄 개정하여 체계성을 보완하여 크게 문제점으로 언급할 만한 조항은 없어 보임
-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해제”라는 법률용어의 명확한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한 모든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위촉해제라는 표현은 제1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임

○ 위원회 구성

- 동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수립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9조의 위원회가 단순히 정책적 자문기구의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갖는 바, 분야별로 해당 인원을 명확히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지방자치법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 제9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유도
- 동 조례 제15조에 “위촉의 해제” 부분을 “위촉의 해촉”이라고 표시하는 것 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7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2013.01.0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지역의 일정한 공간단위에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이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로 생태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입법목표는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됨

○ 법적 정합성

-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시 되는 조문을 찾을 수 없었음

○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생략)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통일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역별로 차별성 있게 생태경관이 조성되는지 생태경관도를 작성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유도

[입법평가사례표 8] 광주광역시 한옥지원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8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2013.01.0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및 제5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건축미를 지닌 한옥을 살기 위한 생활공간과 전통문화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취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한옥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입법목적이 동일한 타 지역 조례로서 「전주시의 한옥보전 지원 조례」와 입법체계를 비교한 결과, ‘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th> <th colspan="2">광주광역시 한옥 지원조례</th> </tr> <tr> <th>제1조</th> <th>목적</th> <th>제1조</th> <th>목적</th> </tr> </thead> <tbody> <tr> <td>제2조</td> <td>정의</td> <td>제2조</td> <td>정의</td> </tr> <tr> <td>제3조</td> <td>지구설정</td> <td>제3조</td> <td>적용대상</td> </tr> <tr> <td>제4조</td> <td>보전정비육성</td> <td>제4조</td> <td>한옥위원회 설치 및 운영</td> </tr> <tr> <td>제5조</td> <td>보전대상물 지정</td> <td>제5조</td> <td>기능</td> </tr> <tr> <td>제6조</td> <td>표창</td> <td>제6조</td> <td>구성</td> </tr> <tr> <td>제7조</td> <td>기준건축물등에 대한 특례</td> <td>제7조</td> <td>임기</td> </tr> <tr> <td>제8조</td> <td>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td> <td>제8조</td> <td>위원장의 직무</td> </tr> <tr> <td>제9조</td> <td>범위 및 비용 지원</td> <td>제9조</td> <td>회의</td> </tr> <tr> <td>제10조</td> <td>구조 및 용도변경</td> <td>제10조</td> <td>소위원회</td> </tr> </tbody> </table>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지구설정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보전정비육성	제4조	한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제5조	기능	제6조	표창	제6조	구성	제7조	기준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7조	임기	제8조	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9조	회의	제10조	구조 및 용도변경	제10조	소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지구설정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보전정비육성	제4조	한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제5조	기능																																												
제6조	표창	제6조	구성																																												
제7조	기준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7조	임기																																												
제8조	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9조	회의																																												
제10조	구조 및 용도변경	제10조	소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조례	
제11조	보조금 신청 절차	제11조	간사
제12조	한옥등록 관리	제12조	회의록
제13조	권리 의무 등의 승계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14조	위원회 행위 제한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매수청구권	제16조	등록
제17조	조세등 감면	제17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18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제18조	등록의 취소
제19조	위원회 설치	제19조	한옥대장
제20조	위원회 임무	제20조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21조	위원회의 소집	제21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2조	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2조	지원시기
제23조	수당 등	제23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세제 등의 감면
부칙		제25조	생활환경 조성
		제26조	한옥의 매수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제28조	보칙

○ 위임 적합성 평가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및 제5호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

- | |
|---------------------|
|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
|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

- | |
|--------------------------------|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
|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지역의 한옥생활공간의 활용을 통해 관련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함

○ 법적 정합성

- 한옥 지원 조례의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점을 갖는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음

○ 위원회 구성

-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한옥지원정책을 위해 설립되는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한옥위원회는 한옥마을 지정, 한옥건축 관련 지원액의 결정, 그리고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옥과 관련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개별 분야별로 인적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배정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협의를 보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신뢰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지방자치법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한옥위원회의 경우, 한옥과 관련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개별 분야별로 인적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배정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유도 필요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한옥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삽입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유도

[입법평가사례표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9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2014.05.0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자치조례	x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 입법 목적의 실현성</td></tr> <tr><td>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td></tr> <tr><td>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td></tr> <tr><td>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td></tr> <tr><td>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td></tr> <tr><td>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td></tr> <tr><td>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td></tr> </tabl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지역의 문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타당한 것이라 평가됨

○ 법적 정합성

-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시 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음
- 제10조에서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동아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그 범위를 용어정의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

- 제15조의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

○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 · 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법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제10조에서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동아리는 지원대상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제2조에서 그 범위에 대해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 제15조의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10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2013.07.01	없음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	자치조례	○
입법체계 평가			
<p>○ 조례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제1조) 			
<p>○ 조례입안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p>○ 위임 적합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정한 조례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p>○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법목적의 실현성

- 본 조례는 여성의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의 생활보호와 그와 관련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이 생활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제16조에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품판매, 택배업체 등과 같은 여성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고 직원 관리가 잘 되는 기업에게는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제로는 여성안전기업의 육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음
- 그러나 법률상 “안전”이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여성안전 생활조례를 통해 여성의 물리적 폭력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면 동 조례에서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가능한 기업체는 제16조에 한정되지 않음
- 여성안전생활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 밝힌 바처럼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면 동 조례 제16조에서 언급한 기업체가 인증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의 범죄나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여성의 갖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구분되지 않은 채 목적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됨

○ 법적 정합성

- 체계성 분석결과 크게 문제시 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음

○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 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지방자치법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 가운데 성폭력 관련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과 개별 규정들이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전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분석결과 제2조 평가개념과 관련해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 양자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에 관해 설명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만, 양자의 의미가 동일하고 조례가 의도한 목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면 “실효성”이란 의미로 통일하는 것이 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동 조례 제4조 평가대상의 경우 위임조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임 및 자치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들어있는 현행 조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례의 평가대상을 2년이 지난 조례로 한정하여 조례개정안에 관해 충분한 심사 및 고려를 하지 못한 채 개정빈도수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조례입법평가 전문가가 많지 않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2년이라는 평가기간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기간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최종 감독 및 통제권자로서 의회의 평가요청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 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입법평가위원회 및 시장은 모두 평가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직접적인 평가주체가 누구이며, 평가수행과 관련해 각각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는 보다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이 갖는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의 장의 경우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에 관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지에 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의회의 감독 및 통제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실제 집행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평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및 임기에 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평가활동과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인원수를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평가기준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평가수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여, 실제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8>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분석결과

항 목	문제점	개선방향
평가개념 제2조	- 사후 입법평가의 개념규정에서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음	- 실효성으로 통일
평가대상 제4조	- 위임조례를 평가대상으로 제외하여 평가대상이 자치조례 위주로 한정되도록 규정함 - 평가대상을 2년 지난 조례로 한정하여 조례개정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 2년마다 평가가 시행되므로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평가대상의 선정과 관련해 의회의 평가요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평가대상의 확대 - 2년이라는 평가기간에 관한 재검토 - 의회의 조례에 관한 평가요구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제 2 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항 목	문제점	개선방향
평가주체 제3조 제6조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및 이하 평가수행기관 간 평가실행시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함 - 총괄부서의 장이 일부 평가사항(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에 관해 평가의뢰권을 갖는 것에 관한 타당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평가절차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임기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 마련
평가기준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상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의 경우 실제 세부 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상의 평가기준과 실제 평가 시 작성되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상 세부 평가항목과의 일치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현철 · 원소연,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법제 연구원, 2012
-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2014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2014
- 광주광역시의회, 제6대 의정백서, 2014
- 광주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13. 06. 10.
- 김대희 · 강현철 · 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균성, 행정법론(下), 박영사, 2010
- 박영도, 입법학용어사전, 한국법제연구원, 2012
-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1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9. 10
- 차현숙 외 1인,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2. 기 타

- 대법원 선고 2006추45 판결,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참 고 문 헌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29000&isfez=>
- 행정자치부 연도별 자치법규 현황정보
<http://www.elis.go.kr/>
- 광주광역시청 시정소식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160301000000&b_code=0000000027&act=view&list_no=286544
- 강경남, 광주드림일보, 2014. 01. 22 기사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2495
- 채정희, 광주드림일보, 2014. 09. 03 기사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8995
- 광주광역시청 시정소식, 2014. 09. 15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160301000000&b_code=0000000027&act=view&list_no=286544

<참고자료 1>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2013-07-01 조례 제425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 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의 예측 등의 적정성

<참고자료 1>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 6 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 7 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 8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01-01 규칙 제2935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평가대상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개정 조례를 말한다..

제 4 조(입법평가서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기획부서의 장 및 시 본청 4급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참고자료 2>

3. 법률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6 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평가의뢰)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괄부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결과통보서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 9 조(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3>

사후 입법평가 작성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리 번호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실·과 작성용)
조례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일간)
평가 의견	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	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

작성자	부서명/팀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참고자료 3>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 관리 번호 및 조례명 :
- 소관 부서 :
- 통보(조치)일 : 20
- 통보내역: 현행 유지 및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검토 규정	평가 내용
제○조	
제○조	
제○조	
...	
종합평가 결과	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별지 제4호서식]

※ 관리번호	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 제출용)	
조례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소관 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소관 부서 의견	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 종합평가 내용	개선권고 내용
	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	-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 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소관 부서의 위원회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	1.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2.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3.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